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기재사항

설치대상 건물주소					
소유주명	소유주 연락처 기타 전화번호				
세대별 주거현황					
구분	성명	관계 (소유주, 임차인)	건축물대장 기준	연락처1	
			호수(~층~호)		전용면적(m ²)
작성 예시	홍길동	임차인	2층201호	103.2	010-1234-1234
1					
2					
3					
4					

본인(소유주)은 안내문 및 하단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주택냉방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주 (인)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귀하

※ 소유주 협의 어려울 시 뒷면 위임장 작성
※ 공동 소유 시 소유주 모두 서명

개인정보보호 안내

본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등)는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목적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보유기간 : 10년)

[관련 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유의사항]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전입세대열람서류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삭제)
- 설치대상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17.6.30)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 아파트, 연립 등이며, 주택용도가 아닌 경우(지하실, 대피소, 물탱크실, 공란 등)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는 주택 관리의 책임이 있는 소유주가 작성하여야 하며, 주소, 세대별 주거현황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단, 소유주가 작성이 어렵거나 향후 설치와 관련된 협의가 불가할 경우 설치에 대한 위임(뒷면 위임장 작성)을 받아 신청할 수 있음. 소유주 미동의 시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개별세대(또는 가구) 당 실외기 1대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설치할 냉방기(벽걸이, 스탠드, 2IN1)는 제조사 냉방용량(면적)이 전용면적 이하의 제품에 한하며, 한국공항공사와 최종 협의하여 주민께서 결정한 사항(제조사, 용량 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전기료와 부대(소모품 등)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하절기(6~9월)기간 동안의 발생되는 전기료는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설치 시 전기공급 용량 증설 등의 시설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냉방시설 설치 후 시운전 등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주택냉방시설 관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국가예산으로 설치된 본 시설의 양도·매매·외부 이동 등은 불가합니다.(전출 시 반드시 전입자에게 냉방기 인계)
- 설치 전에 취소(확인서 작성) 가능하며, 추후 설치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보류·연기 불가)
-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확정 또는 설치 불가능한 사유 발생(ex 실외기실 협소, 시공기간 이후 설치희망 등)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취소확인서 작성 없이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한국공항공사로 접수된 분에 한하며, 기한 내 신청·접수되었다 하더라도 2022년도 예산범위 초과 시 접수순에 따라 설치시기가 다음연도(2023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환경관리부(우편번호 : 07505)

☎ 02)2660-2062~7, 02)2660-2456~9